의안번호	2201105
의 뢰 인	박대출의원
회 답 일	2024.08.22.
추계번호	24D13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19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93년

(단위: 백만원)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급여액 산정의 기초(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96	385	1,096	1,798	2,439	2,836	2,875	2,804	2,776	1,999

주: 1. 급여액 산정의 기초(안 제10조제1항)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승진 순직공무원이 매년 29명(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이 발생하고 유족은 3명이며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각각 50세(순직유족연금), 51세(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로 가정하고,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첫연금액 평균액 등을 활용하여 특별승진 반영 시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3. 유족연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장기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어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하고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제1항(급여액 산정의 기초) 단서 신설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0조제1항(급여액 산정의 기초) 단서 신설	O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증가로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승진 반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증가율은 공무원 봉급표를 활용하여 추정

○ 현행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유족 1인당 5%를 가산하며 가산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유족 1인당 5%를 가산하며 가산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기준소득월액에는 봉급[1]과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 수당 평균액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8개 수당 또한 직급과 봉급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증가율을 공무원 봉급표를 활용하여 추정

-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개인별 과세소득액 - 개인별 8개 수당 지급액 + 직종·직급별 8개 수당 평균액)÷12월×(1+공무원 보수상승률)
- 8개 수당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말함
- 본 추계에서는 순직공무원 중 특별승진한 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구성하고 있는 봉급, 수당 등 항목에 구분 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2]

---

1) 이때, 봉급은 공무원 봉급표 상의 금액을 말하며 보수월액(={봉급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월)과 다름

2)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봉급과 수당 등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을 반영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봉급(공무원 봉급표 기준)만 증가하고, 8개 수당 평균액은 1년 후에 결정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특별승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 기 확정된 전년도의 상위직급의 8개 수당 평균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8개 수당 평균액도 봉급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직종은 경찰 및 소방직의 비율이 높아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하여 경찰 및 소방직 순직자의 인원, 유족 평균 연령 등을 활용하기로 함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승진 순직공무원이 매년 29명(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이 발생하고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각각 50세(순직유족), 51세(위험직무순직유족)로 가정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은 총 145명으로 연평균 29명이고 본 추계에서는 위험직무순직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으로 가정

-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 중 위험직무순직자 비율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활용하면 24%[3)]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순직 승인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대표유족의 평균 연령은 각각 50세(순직유족), 51세(위험직무순직유족)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상승률, GDP디플레이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3월에 작성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Ⅳ」 보고서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상승률, GDP디플레이터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연금급여의 장기적인 지출 특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하고 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

3)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총 96명이고, 이 중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23명으로 24%(=23명÷96명)의 비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급여액 산정의 기초(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1) 순직유족연금

❑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승진 순직공무원이 매년 22명이 발생하고 유족은 3명,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50세이며, 특별승진을 적용하면 최초 연금액이 현행보다 6.8%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수급자 수) 22명의 순직유족연금 수급자가 매년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

○ (증가액) 수급자 1인당 증가액은 2026년 기준 연간 257만원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순직 승인된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의 최초 연금액 평균은 3,036,004원
-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가정하면, 28세에 입직하여 53세까지 3번 승진 후 순직하는 경우 경위/소방위 25호봉으로 추정되며 특별승진하는 경우 경감/소방경 24호봉으로 봉급이 6.8%[4] 상승
- (현행) 최초 연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에 따라 상승
- (개정안) 현행의 최초 연금액에 특별승진을 적용하면 6.8%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순직유족연금 수급개시 후 두 번째 연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 인상

4)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산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15억 4,2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특별승진을 반영한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2026~2093년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수급자 수 (A, 명)	2026	22	22	22	21	18	7	–	–	–	–
	2030	–	22	22	22	20	13	–	–	–	–
	2040	–	–	22	22	22	20	14	–	–	–
	2050	–	–	–	22	22	22	21	14	10	–
	2060	–	–	–	–	22	22	22	21	20	–
	2070	–	–	–	–	–	22	22	22	22	–
	2080	–	–	–	–	–	–	22	22	22	–
	2090	–	–	–	–	–	–	–	22	22	–
	2093	–	–	–	–	–	–	–	–	22	–
증가액 (B, 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2026	257	260	265	271	276	282	–	–	–	–
	2030	–	253	258	263	268	274	–	–	–	–
	2040	–	–	243	248	253	258	263	–	–	–
	2050	–	–	–	241	245	250	255	260	262	–
	2060	–	–	–	–	234	238	243	248	249	–
	2070	–	–	–	–	–	227	231	236	237	–
	2080	–	–	–	–	–	–	218	223	224	–
	2090	–	–	–	–	–	–	–	207	208	–
	2093	–	–	–	–	–	–	–	–	203	–
추가재정소요 (연도별 A×B의 누적 합계, 백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57	282	836	1,379	1,882	2,198	2,230	2,175	2,152	1,542

주: 1. 22명의 순직유족연금수급자가 매년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하면, 2026년 수급자 22명은 2076년경에 모두 사망하여 수급자 수는 0명
2. 증가액은 최초 연금액에 특별승진에 따라 6.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데,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최초 연금액 증가액이 2026년 257만원에서 2093년 20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위험직무순직

❑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승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매년 7명이 발생하고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51세이며, 특별승진을 적용하면 최초 연금액이 현행보다 6.8%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수급자 수) 7명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자가 매년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

○ (증가액) 수급자 1인당 증가액은 2026년 기준 연간 231만원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위험직무순직 승인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최초 연금액 평균은 2,731,785원
-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가정하면, 28세에 입직하여 54세까지 3번 승진 후 순직하는 경우 경위/소방위 26호봉으로 추정되며 특별승진하는 경우 경감/소방경 25호봉으로 봉급이 6.8% 상승
- (현행) 최초 연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에 따라 상승
- (개정안) 현행의 최초 연금액에 특별승진을 적용하면 6.8%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개시 후 두 번째 연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 인상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4억 3,7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특별승진을 반영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2026~2093년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수급자 수 (A, 명)	2026	7	7	7	7	5	2	–	–	–	–
	2030	–	7	7	7	6	4	–	–	–	–
	2040	–	–	7	7	7	6	4	–	–	–
	2050	–	–	–	7	7	7	7	4	3	–
	2060	–	–	–	–	7	7	7	7	6	–
	2070	–	–	–	–	–	7	7	7	7	–
	2080	–	–	–	–	–	–	7	7	7	–
	2090	–	–	–	–	–	–	–	7	7	–
	2093	–	–	–	–	–	–	–	–	7	–
증가액 (B, 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2026	231	234	239	244	248	253	–	–	–	–
	2030	–	227	232	237	241	246	–	–	–	–
	2040	–	–	219	223	228	232	237	–	–	–
	2050	–	–	–	216	221	225	230	234	236	–
	2060	–	–	–	–	210	215	219	223	224	–
	2070	–	–	–	–	–	204	208	212	213	–
	2080	–	–	–	–	–	–	196	200	201	–
	2090	–	–	–	–	–	–	–	186	187	–
	2093	–	–	–	–	–	–	–	–	182	–
추가재정소요 (연도별 A×B의 누적합계, 백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16	81	239	398	537	618	626	611	606	437

주: 1. 7명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자가 매년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하면, 2026년 수급자 7명은 2075년경에 모두 사망하여 수급자 수는 0명
2. 증가액은 최초 연금액에 특별승진에 따라 6.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데,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최초 연금액 증가액이 2026년 231만원에서 2093년 18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사망조위금

❑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순직공무원(위험직무 포함)의 사망조위금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승진 순직공무원(위험직무 포함)이 매년 22명 발생하고 특별승진을 적용하면 기준소득월액이 현행보다 6.8%[5]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대상자 수)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은 매년 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증가액) 2026년 기준 1인당 증가액은 순직공무원 81만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66만원

-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기준 594만원, 489만원으로 추정되며, 특별승진을 적용하면 6.8% 상승
-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배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6.8% 상승분에 2를 곱하여 산출(예: 순직공무원 594만원×6.8%×2배=81만원)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조위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2,0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특별승진 반영한 사망조위금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2026~2093년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대상자 수 (A, 명)	순직	22	22	22	22	22	22	22	22	22	-
	위험직무 순직	7	7	7	7	7	7	7	7	7	-
증가액 (B, 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순직	81	79	77	76	74	71	69	65	64	-
	위험직무 순직	66	65	63	62	60	59	56	53	52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23	22	21	21	20	20	19	18	18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가정하면, 28세에 입직하여 53세까지 3번 승진 후 순직하는 경우 경위/소방위 25호봉으로 추정되며 특별승진하는 경우 경감/소방경 24호봉으로 봉급이 6.8% 상승

Ⅳ.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전망되었으나, 향후 실제 공무원보수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